



# 특별침실 사용수칙

-(제1조) 목적 : 특별침실은 수급자 어르신의 존엄성 유지와 인간다운 삶의 유지 및 시설 내 다른 수급자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(제2조) 설치근거 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.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. 설비기준에 근거하여 입소정원의 5%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침실을 둘 수 있다.

-(제3조) 이용대상자 : ① 촉탁의 또는 협력병원의 의사로부터 전염 또는 감염성의 질환이 있다고 확인된 수급자, ② 정신질환 등으로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수급자, ③ 임종을 맞이하거나 임종하여 다른 수급자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가 필요한 수급자이다.

-(제4조) 규칙 : 담당직원은 보호자에게 특별침실 이용 사유와 기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뒤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를 특별침실로 이동시켜야 한다.

-(제5조) 이용기간 : 감염이나 전염병을 가진 수급자,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타인의 생활에 방해를 하는 수급자의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촉탁의 등이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확인한 날까지로 하며, 임종 또는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임종 후 장례식장으로 전원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.

-(제6조) 응급의료설비 : 특별침실에는 석션기, 산소발생기 등 응급 의료 설비를 이용대상자의 유형별로 필요시 적절히 비치한다

-(제7조) 비상연락망 비치 : 특별침실에는 수급자의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이 비치 되어 있어야 한다.

-(제8조)청결상태 유지 : 특별침실은 필요한 경우 소독을 하며 항상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.

-(제9조) 사용기록지 작성 : 특별침실에서 해당 수급자를 케어하는 직원은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를 포함한 소정의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.